



독일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사회보장정책과

I. 머리말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집행기관인 관할 검찰청에 그 벌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독일형법에서 벌금형(Geldstrafe)은 행위자의 개인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 일수벌금형으로서 최소 5유로, 최대 360일까지 부과할 수 있다(독일 형법 제40조). 그리고 또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가 그 일수벌금을 즉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그 납부기한을 정하거나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도 있다(독일 형법 제42조).

그러나 독일 형법에서는 이러한 일수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일수벌금형을 대신하여 유죄확정자를 자유형으로 대체하여 수감시킬 것을 또한 규정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43조).¹⁾

이러한 대체자유형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독일 형법시행법률(Einführungsgesetz zum Strafgesetzbuch: EGStGB) 제293조 제1항²⁾은 봉사활동(die freie Arbeit)을 통하여 그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명령(Rechtsverordnung)을 제정할 권한을 각 주에 위임하고 있다.



- 1) StGB §43 Ersatzfreiheitsstrafe: An die Stelle einer uneinbringlichen Geldstrafe tritt Freiheitsstrafe. Einem Tagessatz entspricht ein Tag Freiheitsstrafe. Das Mindestmaß der Ersatzfreiheitsstrafe ist ein Tag.(형법 제43조 대체자유형: 미납된 벌금형은 자유형이 대신한다. 1일의 자유형은 1일의 일수벌금과 동일시된다. 대체자유형의 최소한은 1일이다.)
- 2) EGStGB Art. 293 Abwendung der Vollstreckung der Ersatzfreiheitsstrafe: (1) Die Landesregierungen werden ermächtigt, durch Rechtsverordnung Regelungen zu treffen, wonach die Vollstreckungsbehörde dem Verurteilten gestatten kann, die Vollstreckung einer Ersatzfreiheitsstrafe nach §43 des Strafgesetzbuches durch freie Arbeit abzuwenden. Soweit der Verurteilte die freie Arbeit geleistet hat, ist die Ersatzfreiheitsstrafe erledigt. Die Arbeit muß unentgeltlich sein; sie darf nicht erwerbswirtschaftlichen Zwecken dienen. Die Landesregierungen können die Ermächtigung durch Rechtsverordnung auf die Landesjustizverwaltungen übertragen.(형법시행법률 제293조 대체자유형의 집행회피: 제1항. 지방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하여 형집행기관이 유죄선고를 받은 자에게 형법 제43조에 따른 대체자유형을 봉사활동을 통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이를 위하여 독일연방의 각 주들은 “수감 대신에 땀의 노동 - 대체자유형 대신에 사회봉사(Schwitzen statt Sitzen - gemeinnützige Arbeit statt Ersatzfreiheitsstrafe)”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³⁾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수감비용을 절감하고 또한 유죄선고를 받은 자에게 불필요한 수감생활을 통한 범죄환경에의 접촉을 회피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각 주는 벌금미납자에게 부과되는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사회봉사(die gemeinnützige Arbeit)를 통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법규명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독일연방은 모두 16개의 주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각 주들의 법규명령의 명칭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⁴⁾ 즉, “봉사활동을 통한 대체자유형의 집행회피에 관한 법규명령(Verordnung über die Abwendung der Vollstreckung von Ersatzfreiheitsstrafe durch freie Arbeit)”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주들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이하 ErsFrhStrAbwV BW), 베를린(Berlin; 이하 BerlErsFrhStrAbwV),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이하 ErsFrh-StrAbwV Brandenburg),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이하 ErsFrhStrAbwV M.-V.),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이하 ErsFrhStrAbwV Rhl.-Pfalz), 자알란트(Saarland; 이하 SaarErsFrhStrAbwV),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이하 ErsFrhStrAbwV LSA), 쉬레스비히-홀스타인(Schleswig-Holstein; 이하 ErsFrhStrAbwV Schl.-Holst.) 8개주이고, “봉사활동을 통한 미납된 벌금형의 변제에 관한 법규명령(Verordnung über die Tilgung uneinbringlicher Geldstrafen durch freie Arbeit)”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주들은 헤센(Hessen; 이하 Hessische GeldstrTilgV), 튀링엔(Thüringen; 이하 GeldstrTilgV TH),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이하 Geld-strTilgV NRW) 3개주이며, 함부르크(Hamburg)는 “사회봉사를 통한 대체자유형의 집행회피에 관한 법규명령(Verordnung über die Abwendung der Vollstreckung von Ersatzfreiheitsstrafe durch gemeinnützige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봉사활동을 이행한 경우에는 대체자유형은 면제된다. 봉사활동은 보수 없이 수행하여야만 하며, 따라서 봉사활동은 영리적인 경제목적에 기여해서는 안된다. 지방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하여 그 권한을 지방법무부에 이관할 수 있다.)

3)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2006년도에 수감자에 대한 구속일수를 195,313일을 줄임으로써 190만 유로의 수감비용을 절감하였다. (<http://www.justiz.baden-wuerttemberg.de/servlet/PB/menu/1153541/index.html?ROOT=1153239> 참조) 베를린(Berlin)시 또한 2003년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6,942명을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하여 구속일수를 156,989일을 줄임으로써 수감비용 1350만 유로를 절감하였고(<http://www.berlin.de/sen/justiz/presse/archiv/20040402.19590.html> 참조), 2005년도에는 구속일수 161,528일과 수감비용 1280만 유로를 절감하였다 (<http://www.berlin.de/sen/justiz/presse/archiv/20060426.1340.38848.html> 참조)

4) 여기에서는 독일연방의 주들 중에서 작센(Sachsen)주와 니더작센(Niedersachsen)주는 고찰대상에서 제외한다



Arbeit; 이하 HmbErsFrhStrAbwV)”이라는 명칭을, 브레멘(Bremen)은 “벌금형변제법규명령(Geldstrafentilgungsverordnung; 이하 BRGeldstrTilgV)”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단, 바이에른(Bayern)주는 다른 주와는 달리 봉사활동을 통한 대체자유형의 집행회피를 위한 독립적인 법규명령은 존재하지 않고, “은전에 관한 법규명령(Bayerische Gnadenordnung; 이하 BayGnO)”내에 제31조에서 제34조까지의 조항을 통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대체자유형의 집행회피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봉사활동을 통한 미납된 벌금형의 대체자유형의 집행회피에 관한 각 주들의 법규명령을 고찰함으로써, 독일의 행정체계내에서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사회봉사명령의 신청과 그 결정

1. 형 집행권자와 벌금징수기관

형벌이 확정되면 독일 형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라서 확정된 형벌은 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청에 의해서 집행된다. 특히 벌금형의 집행에 있어

서 독일 형사소송법 제459조는 사법강제집행령(Justizbeitreibungsordnung)의 해당조항에 따르면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강제집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벌금형에 대한 집행은 소송법률에 따른 관할 형집행기관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형뿐만 아니라 벌금형 또한 형집행기관으로서 관할 검찰청이 그 형의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2.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신청자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벌금을 미납한 경우에, 그 유죄확정자에게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봉사활동을 통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형집행기관은 신청을 통하여 허가할 수 있다.⁵⁾ 여기에서 벌금미납의 상황이 예를 들어 갑자기 실직을 해서 더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처럼 부득이하게 발생된 유죄확정자의 개인적·경제적 상황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유죄확정자가 고의적으로 선고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신청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⁶⁾

이러한 내용과 관련되어 차이가 있는 주의 법규명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BerlErsFrhStrAbwV 제1조 제1항; BayGnO 제31조 제1항 제1문;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1조 제1항; ErsFrhStrAbwV BW 제1조 제1항; HmbErsFrhStrAbwV 제1조 제1항; Hessische GeldstrTilgV 제1조 제1항; ErsFrhStrAbwV M.-V. 제1조 제1항; GeldstrTilgV NRW 제1조 제1항; ErsFrhStrAbwV Rhl.-Pfalz 제1조 제1항; SaarlErsFrhStrAbwV 제1조 제1항; ErsFrhStrAbwV LSA 제1조 제1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1조 제1항; GeldstrTilgV TH 제1조 제1항.

6)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대체자유형에 대한 집행이 명령되면, 형집행기관은 유죄확정자에게 특정기간내에 사회봉사를 통한 대체자유형의 집행회피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해야만 한다. 이 때 형집행기관은 유죄확정자에게 사회봉사를 할 장소를 주선하고 그 여건에 관해서 설명해야만 한다. BayGnO 제32조 제1항 제1문;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2조 제1항;

- ① 봉사활동을 통한 대체자유형의 집행회피를 위하여 대부분의 주들의 경우에 형집행기관은 유죄확정자에게 그 가능성을 통지하고 유죄확정자의 “신청을 통하여” 그 사회봉사명령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에 반하여 브레멘시와 바이에른주는 이러한 신청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⁷⁾
- ② 신청서제출과 관련하여 제출기간에 대하여 대부분의 주들은 “특정기간내에”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신청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들이 있다. 즉 베를린시의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⁸⁾ 바이에른주, 자알란트주, 작센-안할트주, 쉬레스비히-홀스타인주는 1주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⁹⁾
- ③ 신청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주들은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베를린시는 신청서에 당

시의 수입관계와 유죄확정자의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장소로 예상되는 사회봉사장소의 고용주의 동의서를,¹⁰⁾ 라인란트-팔츠주는 사회봉사장소의 고용주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¹⁾

3. 사회봉사명령의 신청부적격자

유죄확정자가 이미 대체자유형으로 인하여 수감되어 그 형이 집행되고 있거나, 또는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 등은 사회봉사를 통한 대체자유형의 집행회피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¹²⁾

단 베를린시,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자알란트주, 쉬레스비히-홀스타인주는 유죄확정자가 수감시설로 이감되어 대체자유형이 집행중이라 하더라도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허가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경우에는 형집행기관은 유죄확정자에게 사회봉사를 통한 대체자유형의 집행회피를 위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¹³⁾ 브레멘시는 유죄확



BRGeldstrTilgV 제2조 제1항; ErsFrhStrAbwV BW 제2조 제1항; HmbErsFrhStrAbwV 제1조 제3항; Hessische GeldstrTilgV 제2조 제1항; ErsFrhStrAbwV M.-V. 제2조; GeldstrTilgV NRW 제2조 제1항; SaarlErsFrhStrAbwV 제2조 제1항; ErsFrhStrAbwV LSA 제2조 제1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2조 제1항; GeldstrTilgV TH 제2조 제1항.

7) BayGnO 제31조 제1항 제1문; BRGeldstrTilgV 제1조 제1항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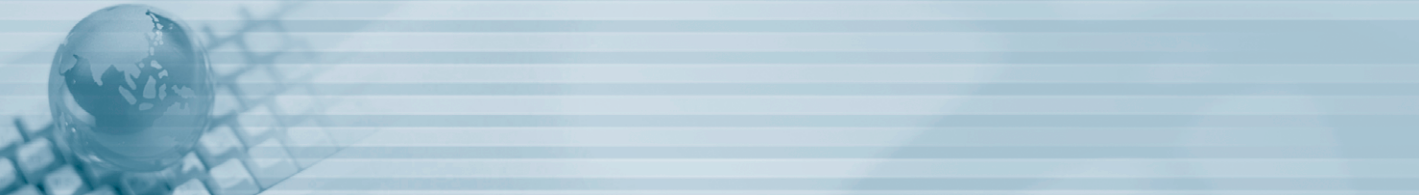
8) BerlErsFrhStrAbwV 제2조 제1항.

9) BayGnO 제32조 제1항 제1문; SaarlErsFrhStrAbwV 제2조 제1항; ErsFrhStrAbwV LSA 제2조 제1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2조 제1항.

10) BerlErsFrhStrAbwV 제2조 제1항.

11) ErsFrhStrAbwV Rhl.-Pfalz 제2조 제1항.

12)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2조 제1항; ErsFrhStrAbwV BW 제2조 제1항; GeldstrTilgV NRW 제2조 제1항; ErsFrhStrAbwV Rhl.-Pfalz 제2조 제2항; ErsFrhStrAbwV LSA 제2조 제2항; GeldstrTilgV TH 제2조 제1항.



정자의 거주지가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¹⁴⁾ 다만, 쉬레스비히-홀스타인주는 유죄확정자가 이전의 범죄로 인하여 사회봉사의 이행의 결과로 그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¹⁵⁾

4.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결정

형집행기관이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형집행기관은 사회봉사장소, 사회봉사의 내용, 예상되는 하루의 사회봉사시간 그리고 전체의 사회봉사시간의 계산 등을 결정한다. 또한 형집행기관은 유죄확정자에게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취소가능성을 설명해주어야만 한다.¹⁶⁾

각 주들에 있어서 사회봉사명령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형집행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관할 검찰청이 그 형집행기관이 됩

에 반하여, 바이에른 주에서는 그 권한을 주 대검찰청장에게 부여하고, 주 대검찰청장이 그 권한을 검사들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⁷⁾

브란덴부르크주, 헤센주에서는 사회봉사와 관련된 장소의 주선과 사회봉사내용의 설명에 있어서 법원의 사회적 공익관리들(die Sozialen Dienste der Justiz)을 참가시켜야만 한다.¹⁸⁾

그리고 형집행기관에 의해 허용된 지시에 따라 기간에 적합하게 제출된 유죄확정자의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한 대체자유형의 집행회피가 허용된 경우에는 대체자유형의 집행은 중지된다.¹⁹⁾

그러나 형집행기관은 유죄확정자가 봉사활동을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또는 결정시에 유죄확정자가 교도소에 수감중이거나 사회봉사에 따른 고용관계가 적절한 시점에 형성될 수 없는 근거가 존재하면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한다.²⁰⁾



- 13) BerlErsFrhStrAbwV 제2조 제2항;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5조 제1항; ErsFrhStrAbwV M.-V. 제4a조 제1항; SaarlErsFrhStrAbwV 제2조 제2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3조 제3항, 제4a조 제1항.
- 14) BRGeldstrTilgV 제2조 제1항.
- 15) ErsFrhStrAbwV Schl.-Holst. 제2조 제4항.
- 16) BerlErsFrhStrAbwV 제3조 제2항;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3조 제1항; ErsFrhStrAbwV BW 제3조 제1항; HmbErsFrhStrAbwV 제3조 제1항, 제2항; Hessische GeldstrTilgV 제3조 제4항; ErsFrhStrAbwV M.-V. 제3조 제1항; GeldstrTilgV NRW 제3조 제1항; ErsFrhStrAbwV Rhl.-Pfalz 제3조 제1항; SaarlErsFrhStrAbwV 제3조 제1항; ErsFrhStrAbwV LSA 제2조 제3항, 제3조 제1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3조 제1항; GeldstrTilgV TH 제2조 제3항.
- 17) BayGnO 제31조 제1항 제2문.
- 18)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9조; Hessische GeldstrTilgV 제9조; GeldstrTilgV NRW 제8조; GeldstrTilgV TH 제9조 제2항.
- 19) BayGnO 제32조 제3항;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4조; BRGeldstrTilgV 제2조 제4항; ErsFrhStrAbwV BW 제4조; Hessische GeldstrTilgV 제7조; ErsFrhStrAbwV M.-V. 제4조; GeldstrTilgV NRW 제4조; ErsFrhStrAbwV Rhl.-Pfalz 제5조 제1항; ErsFrhStrAbwV LSA 제4조 제1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4조 제1항; GeldstrTilgV TH 제4조.
- 20)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3조 제2항; ErsFrhStrAbwV BW 제3조 제2항; Hessische GeldstrTilgV 제3조 제1항;

5. 사회봉사 이행과 관련하여 위임인의 사용

형집행기관은 유죄확정자에 대한 사회봉사를 통한 대체자유형의 집행회피를 위한 신청이 허가되면, 법원보조인 또는 수행자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에게 적합한 사회봉사장소의 결정과 유죄확정자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감시를 위임할 수 있다.²¹⁾

III. 사회봉사활동

1. 봉사활동의 의미

각 주의 봉사활동을 통한 대체자유형의 집행회피에 관한 법규명령에서 의미하는 봉사활동은

공익적이고 무보수의 봉사활동으로서 사회봉사 활동을 의미한다.²²⁾ 따라서 봉사활동을 통한 고용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²³⁾ 다만, 대부분의 주들에서는 유죄확정자가 봉사활동의 이행과 관련되어 사용한 경비 - 예를 들어, 교통비 등 - 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⁴⁾

2. 사회봉사자의 의무

사회봉사명령을 허락받은 유죄확정자는 형집행기관 또는 그 위임인의 지시와 사회봉사와 관련된 범위내에서 사회봉사장소의 고용주의 정당한 명령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²⁵⁾ 특히 유죄확정자는 선택되어진 사회봉사에 있어서 관례적



ErsFrhStrAbwV M.-V. 제3조 제2항; GeldstrTilgV NRW 제3조 제2항; ErsFrhStrAbwV RhL.-Pfalz 제3조 제2항; ErsFrhStrAbwV LSA 제2조 제2항, 제3조 제2항; GeldstrTilgV TH 제5조.

- 21) BerlErsFrhStrAbwV 제3조 제1항; BRGeldstrTilgV 제6조 제1항; HmbErsFrhStrAbwV 제3조 제6항; ErsFrhStrAbwV M.-V. 제2조, 제8조 제1항; ErsFrhStrAbwV RhL.-Pfalz 제2조 제3항; SaarlErsFrhStrAbwV 제2조 제3항; ErsFrhStrAbwV LSA 제2조 제3항, 제5조 제1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 GeldstrTilgV TH 제9조 제1항.
- 22) BerlErsFrhStrAbwV 제1조 제2항; BayGnO 제31조 제2항 제1문;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1조 제2항; BRGeldstrTilgV 제1조 제2항; ErsFrhStrAbwV BW 제1조 제2항; HmbErsFrhStrAbwV 제1조 제2항; Hessische GeldstrTilgV 제1조 제2항; ErsFrhStrAbwV M.-V. 제1조 제2항; GeldstrTilgV NRW 제1조 제2항; ErsFrhStrAbwV RhL.-Pfalz 제1조 제2항; SaarlErsFrhStrAbwV 제1조 제2항; ErsFrhStrAbwV LSA 제1조 제2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1조 제2항; GeldstrTilgV TH 제1조 제2항.
- 23) BerlErsFrhStrAbwV 제1조 제2항; BayGnO 제33조 제1호;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1조 제3항; ErsFrhStrAbwV BW 제1조 제3항; ErsFrhStrAbwV M.-V. 제1조 제3항; GeldstrTilgV NRW 제1조 제3항; SaarlErsFrhStrAbwV 제1조 제3항; ErsFrhStrAbwV LSA 제1조 제3항.
- 24) BerlErsFrhStrAbwV 제1조 제3항; ErsFrhStrAbwV BW 제1조 제2항 제2문; Hessische GeldstrTilgV 제1조 제2항; ErsFrhStrAbwV M.-V. 제1조 제2항; GeldstrTilgV NRW 제1조 제2항; ErsFrhStrAbwV RhL.-Pfalz 제1조 제2항; SaarlErsFrhStrAbwV 제1조 제2항; ErsFrhStrAbwV LSA 제1조 제2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1조 제2항; GeldstrTilgV TH 제1조 제2항.
- 25) BerlErsFrhStrAbwV 제4조 제1항;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6조; BRGeldstrTilgV 제3조; ErsFrhStrAbwV BW 제5조; HmbErsFrhStrAbwV 제3조 제3항 제1문, 제2문; Hessische GeldstrTilgV 제4조; ErsFrhStrAbwV M.-V. 제5조 제1항; ErsFrhStrAbwV RhL.-Pfalz 제4조; SaarlErsFrhStrAbwV 제3조 제3항; ErsFrhStrAbwV LSA 제6조 제1항, 제2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5조 제3항; GeldstrTilgV TH 제3조.



으로 작업수행시에 작업복을 입는 경우에는 그 작업복을 착용해야만 한다.²⁶⁾

3. 사회봉사시간의 산정

독일 형법 제43조에 따르면 “미납된 벌금형은 자유형으로 대체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각 주의 법규명령에서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액에 대한 제한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고받은 일수벌금액중 납부하지 않은 모든 일수벌금액이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액이다.

브레멘시를 제외하고 모든 주들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체자유형의 1일의 집행을 6시간의 사회봉사를 통하여 대체하고 있으며,²⁷⁾ 예외적으로 사회봉사의 내용과 환경 또는 유죄확정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회봉사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²⁸⁾ 이러한 사회봉사시간의 단

축의 예를 열거하고 있는 주들이 있는데, 즉, 베를린시, 바이에른주 그리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그리고 22시에서 06시까지의 야간에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의 사회봉사시간을 3시간으로 계산하고,²⁹⁾ 베를린시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는 또한 건강상의 문제 또는 가정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에도 사회봉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3시간이하로는 단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⁰⁾

그리고 헤센주의 경우에는 사회봉사시간 단축을 위한 별도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는데, 즉 유죄확정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수의 절반을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지체없이 그리고 이의제기없이 이행한 경우에, 형집행기관은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형일수의 사회봉사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³¹⁾



26) BerlErsFrhStrAbwV 제4조 제2항 제1호; HmbErsFrhStrAbwV 제3조 제4항; ErsFrhStrAbwV M.-V. 제5조 제2항; GeldstrTilgV NRW 제5조; ErsFrhStrAbwV LSA 제6조 제2항.

27) BerlErsFrhStrAbwV 제5조 제1항; BayGnO 제31조 제2항 제1문;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8조 제1항 제1문; ErsFrhStrAbwV BW 제7조 제1항 제1문; HmbErsFrhStrAbwV 제2조 제1항 제2문; Hessische GeldstrTilgV 제5조 제1항; ErsFrhStrAbwV M.-V. 제7조 제1항; GeldstrTilgV NRW 제7조 제1항; ErsFrhStrAbwV Rhl.-Pfalz 제7조 제1항; SaarlErsFrhStrAbwV 제3조 제1항; ErsFrhStrAbwV LSA 제7조 제1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7조 제1항; GeldstrTilgV TH 제2조 제4항.

28) BayGnO 제31조 제2항 제2문;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8조 제1항 제2문; ErsFrhStrAbwV BW 제7조 제1항 제2문; HmbErsFrhStrAbwV 제2조 제1항 제2문; Hessische GeldstrTilgV 제5조 제2항; ErsFrhStrAbwV M.-V. 제7조 제1항; GeldstrTilgV NRW 제7조 제1항; ErsFrhStrAbwV LSA 제7조 제1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7조 제1항; GeldstrTilgV TH 제2조 제4항. 단, 브레멘시의 경우에는 1일의 사회봉사시간은 4시간이며, 예외적인 경우의 사회봉사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BRGeldstrTilgV 제4조) 그리고 라인란트-팔츠주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사회봉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ErsFrhStrAbwV Rhl.-Pfalz 제7조 제1항)

29) BerlErsFrhStrAbwV 제5조 제1항; BayGnO 제31조 제2항 제2문; ErsFrhStrAbwV M.-V. 제7조 제1항.

30) BerlErsFrhStrAbwV 제5조 제1항; ErsFrhStrAbwV M.-V. 제7조 제1항.

31) Hessische GeldstrTilgV 제5조 제1항.

4. 전체사회봉사시간의 계산

유죄확정자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사회봉사에 불참한 경우에, 불참한 사회봉사시간은 전체 사회봉사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³²⁾

5. 사회봉사의 부분이행에 따른 처리

유죄확정자가 사회봉사의 이행에 있어서 전체의 사회봉사시간의 일부분만을 이행한 경우에, 그 잔존하는 나머지의 사회봉사시간은 집행되어 질 대체자유형으로 계산되어 집행된다.³³⁾

6. 교정시설내에서의 사회봉사명령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그리고 쉬레스비히-홀스타인주에서는 예외적으로 교정시설내에 적합한 대체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교정시설내에서의 사회봉사활동이 유죄확정자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으며,³⁴⁾ 이 경우에는 유죄확정자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감시자는 행형시설의 장이 된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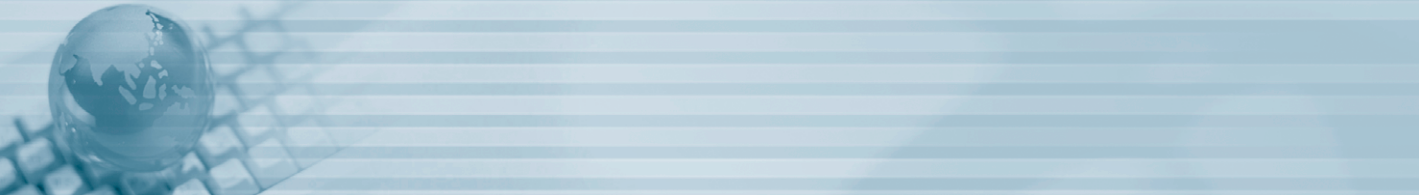
- 32) BerlErsFrhStrAbwV 제5조 제2항;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8조 제2항; BRGeldstrTilgV 제5조 제3항; ErsFrhStrAbwV BW 제7조 제2항; HmbErsFrhStrAbwV 제2조 제2항; Hessische GeldstrTilgV 제5조 제3항; ErsFrhStrAbwV M.-V. 제7조 제2항; GeldstrTilgV NRW 제7조 제2항; ErsFrhStrAbwV Rhl.-Pfalz 제7조 제2항; SaarlErsFrhStrAbwV 제3조 제2항; ErsFrhStrAbwV LSA 제7조 제2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7조 제2항; GeldstrTilgV TH 제6조 제2항.
- 33) BayGnO 제34조 제2항; ErsFrhStrAbwV BW 제7조 제4항; ErsFrhStrAbwV Rhl.-Pfalz 제7조 제5항; ErsFrhStrAbwV LSA 제7조 제3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7조 제4항.
- 34)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5조 제2항; ErsFrhStrAbwV M.-V. 제4a조 제2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4a조 제2항.
- 35)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5조 제4항; ErsFrhStrAbwV M.-V. 제4a조 제4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4a조 제4항.
- 36) BerlErsFrhStrAbwV 제7조 제1항; BayGnO 제34조 제1항;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7조 제1항; BRGeldstrTilgV 제5조 제2항; ErsFrhStrAbwV BW 제6조 제1항; HmbErsFrhStrAbwV 제4조 제1항; Hessische GeldstrTilgV 제6조 제1항; ErsFrhStrAbwV M.-V. 제6조 제1항; GeldstrTilgV NRW 제6조 제1항; ErsFrhStrAbwV Rhl.-Pfalz 제6조 제1항;

IV. 사회봉사명령허가의 취소와 종료

1. 사회봉사명령의 취소

유죄확정자가 ① 충분한 이유없이 형집행기관에 의해 제시된 장소에서의 사회봉사를 거절하거나, 반복적으로 결석 또는 사회봉사를 중단시키는 경우, ② 사회봉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회봉사장소의 고용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제기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③ 유죄확정자에 대한 형집행기관 또는 그 위임인의 지시 또는 사회봉사장소의 고용주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그리고 ④ 사회봉사장소의 고용주가 유죄확정자의 유책한 행위로 인하여 추후에 사회봉사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형집행기관은 유죄확정자에게 허가된 사회봉사명령을 취소한다.³⁶⁾

이 경우에 형집행기관은 유죄확정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을 실시해야만 하고, 취소명령과 그 이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유죄확정자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단 유죄확



정자가 도피중이거나 또는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한 청문과 통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³⁷⁾ 이러한 사회봉사명령의 취소에 있어서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작센-안할트주에서는 법원의 사회적 공익관리들 (die Sozialen Dienste der Justiz)을 참가시켜야만 한다.³⁸⁾

2. 사회봉사명령의 종료

유죄확정자가 기존의 사회봉사장소의 고용주와 더 이상 계속적인 사회봉사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적절한 시간내에 사회봉사활동의 이행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형집행기관에 의하여 허용된 사회봉사명령은 종료된다.³⁹⁾

V. 대체자유형의 면제

유죄확정자가 명령된 사회봉사의 전체시간을 이행하였다는 것이 형집행기관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면, 그것을 통하여 대체자유형은 면제된다.⁴⁰⁾ 형집행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유죄확정자에게 문서로서 통지해야만 한다.⁴¹⁾

이에 대하여 베를린시, 브레멘시, 라인란트-팔츠주, 자알란트주, 헤센주, 튀링엔주는 유죄확정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종료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우고 있다. 즉 유죄확정자가 그에게 명령된 사회봉사명령을 전부 이행하였으면, 형집행기관 또는 그 위임인에게 지체없이 사회봉사장소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여 그것을 증명해야만 한다.⁴²⁾ 만약 유죄확정자의 유



SaarlErsFrhStrAbwV 제5조 제1항; ErsFrhStrAbwV LSA 제8조 제1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6조 제2항; GeldstrTilgV TH 제7조 제1항.

37) BerlErsFrhStrAbwV 제7조 제3항;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7조 제1항; ErsFrhStrAbwV BW 제6조 제1항; Hessische GeldstrTilgV 제6조 제1항; GeldstrTilgV NRW 제6조 제1항; ErsFrhStrAbwV RhL.-Pfalz 제6조 제3항; SaarlErsFrhStrAbwV 제5조 제2항; ErsFrhStrAbwV LSA 제8조 제2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6조 제3항.

38)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9조; ErsFrhStrAbwV M.-V. 제8조 제2항; ErsFrhStrAbwV LSA 제5조 제3항.

39) BerlErsFrhStrAbwV 제7조 제2항;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7조 제2항; ErsFrhStrAbwV BW 제6조 제2항; HmbErsFrhStrAbwV 제4조 제2항; Hessische GeldstrTilgV 제6조 제2항; ErsFrhStrAbwV M.-V. 제6조 제2항; GeldstrTilgV NRW 제6조 제2항; ErsFrhStrAbwV RhL.-Pfalz 제6조 제2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6조 제1항; GeldstrTilgV TH 제7조 제2항.

40)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8조 제3항; BRGeldstrTilgV 제5조 제1항; ErsFrhStrAbwV BW 제7조 제3항; HmbErsFrhStrAbwV 제2조 제1항 제1문; ErsFrhStrAbwV M.-V. 제7조 제3항; GeldstrTilgV NRW 제7조 제3항; ErsFrhStrAbwV RhL.-Pfalz 제7조 제4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7조 제3항; GeldstrTilgV TH 제6조 제1항.

41)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8조 제3항; ErsFrhStrAbwV BW 제7조 제3항; ErsFrhStrAbwV M.-V. 제7조 제3항; GeldstrTilgV NRW 제7조 제3항; ErsFrhStrAbwV Schl.-Holst. 제7조 제3항.

42) BerlErsFrhStrAbwV 제8조 제1항 제1문; BRGeldstrTilgV 제5조 제1항; Hessische GeldstrTilgV 제8조; ErsFrhStrAbwV RhL.-Pfalz 제7조 제4항; SaarlErsFrhStrAbwV 제4조 제1문; GeldstrTilgV TH 제8조.

책한 부작위로 인하여 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추후에 발생하는 대체자유형의 집행에 대한 불이익은 유죄확정자가 부담해야만 한다.⁴³⁾

또한 유죄확정자는 그에게 부과된 벌금중에서 대체자유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의 이행을 통해서 상계하고 남은 벌금을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또한 대체자유형의 집행은 면제된다.⁴⁴⁾

이 재 일

(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43) BerlErsFrhStrAbwV 제8조 제1항 제2문; SaarErsFrhStrAbwV 제4조 제2문.

44) BerlErsFrhStrAbwV 제5조 제3항; ErsFrhStrAbwV Brandenburg 제8조 제4항; BRGeldstrTilgV 제5조 제4항; ErsFrhStrAbwV BW 제7조 제5항; HmbErsFrhStrAbwV 제2조 제3항; Hessische GeldstrTilgV 제5조 제4항; ErsFrhStrAbwV M.-V. 제7조 제4항; GeldstrTilgV NRW 제7조 제4항; ErsFrhStrAbwV Rhl.-Pfalz 제7조 제3항; SaarErsFrhStrAbwV 제3조 제4항; ErsFrhStrAbwV LSA 제1조 제4항; GeldstrTilgV TH 제6조 제3항.